**숭검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회의 명칭은 숭검회이다.

**제2조 [목적]**

① 본 회의 목적은 검도를 통해 정신과 몸을 수련하고 회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3조 [소재지]**

① 본 회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 자격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① 입회 희망자는 회장단의 심사를 거쳐 입부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동아리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운영진에게 재무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운영진에게 안건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본 회의 회원은 운영진의 교체를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⑤ 본 회의 회원은 정기 모임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활동 학기 당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한 학기에 두 번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한 달에 두 번 정기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① 본 회의 회원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시 회장단의 동의 후 동아리를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 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회장단의 판단 하에 제명당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회원이 동아리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불화를 조장한다고 판단될 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고, 과반수 동의 시 제명당할 수 있다.

**제3장 회장단 및 운영진**

**제9조 [회장단의 임기]**

①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으로 정의한다.

②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제10조 [회장단 선출 방식]**

①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회장 후보 중 임명된다.

② 회장 후보는 해당 학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자원과 전임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③회장은 회장 후보 중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로 선정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으로 발탁된다.

**제11조 [회장단]**

① 회장은 동아리 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이다.

1. 회장은 동아리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장은 교외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은 동아리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은 동아리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5. 회장은 동아리 재무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6. 회장은 회원의 건의 사항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지위와 권한을 위임한다.

**제12조 [안건책임자]**

① 안건책임자는 특정 안건을 수행하는 임원이다.

② 안건책임자는 회장단이 임명하며 본 안건에 대해 회장단과 자료를 공유하며 논의할 의무를 지닌다.

③ 안건 책임자는 회장단이 해당 안건이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책임자 본인이 사퇴를 하기 전까지는 해임되지 않는다.

**제13조 [회장단의 교체]**

① 회장단이 건전한 동아리 운영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시 회원이 정기 모임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대체 후보를 제시하여 정기 모임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시 회장단은 인수인계 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집회**

**제14조 [정기 모임]**

① 정기 모임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열리며 그 중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로 개최된다.

② 회의에서는 회원이 건의한 안건과 회장단이 상정한 안건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③ 회장단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시 교체 사유가 된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한 학기에 두 번,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로 구성된다.

② 총회에서는 동아리의 현황 보고와 회장의 선거, 결산보고 등이 이루어진다.

**제5장 재정**

**제16조 [수입]**

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 및 개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제17조 [회비]**

① 회비는 학기 당 2만원으로 책정되며 회장단을 포함한 모든 회원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개인 부담금]**

① 개인 부담금은 장비 구입비, 대회 참가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개인 부담금은 회원 개인이 소비하는 비용 중에 측정된다.

**제19조 [결산보고]**

① 회장단은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6장 동아리 등록**

**제20조 [등록]**

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7장 부칙**

**제21조 [회칙 발효]**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초판 [2020.02.27.]

1차 개정 [2021.02.28.]

2차 개정 [2022.03.02.]

3차 개정 [2023.03.28.]

**제22조 [회칙 개정]**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정기 모임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